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등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46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등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4.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

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등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등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 외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업무,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② (생략)	제4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④ -----

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u>행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 <u>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u> ---- -----. ⑤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 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u> 1. 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 기 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 마련 2. 제3항에 따른 교육 · 홍보 및 연구개발 업무 3. 제4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 무
* 부 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의2¹⁾는 식품등²⁾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이하 ‘점자등 표시’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점자등 표시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³⁾」과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⁴⁾」을 마련하였으며, 점자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⁵⁾을 수행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기준 점자 표시 참여 제품은 전체 제품의 0.04%,

1)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현행법 제2조제7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식품등”이라 약칭함.

3)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시행일	구분	내용
2022. 7.	제정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규격·방법, 표시 정보 등 안내
2024. 3.	1차 개정	세부 용기·포장의 재질·형태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점자 등 표시 위치 안내 등 사례 제시
2026. 3.	2차 개정	영업자들이 점자 표시를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 첨부

4)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제정 (2025. 6.)

- 식품 표시정보 관련 수어표현 456개 개발한 수어모음집, 수어영상 제작 과정 및 단계별 제작 지침 수록

5) <연구사업 내용>

수행연도	내 용
2023년	‘식품 표시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사업
2024년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마련’ 연구사업
2025년	‘식품의 점자 표시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사업
2026년	‘식품의 점자 등 표시 적용 사례 조사’ 연구사업

참여 업체는 전체 업체의 0.18%에 불과하고, 2026년 기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참여 제품은 전체 제품의 0.01%, 참여 업체는 전체 업체의 0.17%에 그쳐 점자등 표시는 극히 일부 제품과 업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등의 점자 표시 참여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 제품(개)	439	595	860
전체 제품(개)	1,722,562	1,914,826	2,126,389*
참여율(%)	0.03	0.03	0.04
참여 업체(개소)	49	67	69
전체 업체(개소)	38,740	38,307	37,992**
참여율(%)	0.13	0.17	0.18

* 식품 1,278,094개, 축산물 802,723개, 건강기능식품 45,572개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 33,135개소, 축산물 4,282개소, 건강기능식품 575개소 (자료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등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참여 현황 >

구분	2026년 (2026. 6. 30. 기준)
참여 제품(개) / 전체 제품(개)	243 / 2,233,071
참여율(%)	0.01
참여 업체(개소) / 전체 업체(개소)	66 / 37,999
참여율(%)	0.17

자료: 식품안전정보원

-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등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자등 표시를 활성화하고 시각·청각장애인의 표시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안 제4조의2제3항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의 점자등 표시 대상은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4조의2제3항의 ‘식품 표시정보’를 ‘식품등의 표시정보’로 수정하여 적용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이 행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⁶⁾에서도 점자 표시 장비 구입 비용과 수어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담 등이 점자등 표시 도입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⁷⁾.

이에 안 제4조의2제4항과 같이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자등 표시를 활성화하는 데

6) <영업자 실태조사(「식품의 점자 등 표시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2025.12.)) 개요>

구분	내용
실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위탁 수행)
조사 대상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소속 식품 및 포장재 제조업체
조사 기간	2025. 11. 3. ~ 11. 14.
유효 표본	36개소(대기업 4개, 중견기업 28개, 중소기업 4개)
조사 내용	- 정부의 식품표시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표시 제공 현황 - 점자 또는 QR코드 표시 도입 및 확대 의향

7) <점자등 표시 도입 관련 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 제약요인: 점자의 경우 장비 비용 부담(44.4%), 수어 영상의 경우 콘텐츠 제작 부담(72.2%)
- 필요한 지원 : 비용 지원(44.4%), 세제 혜택(33.3%),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16.7%)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점자등 표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필요하나, 표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화장품법」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찬성

-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 개정안 취지에 찬성함.
- 동 개정안은 점자 및 수어 적용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는 점⁹⁾을 고려하여 식품 분야에도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함.

8) [참고 1] 재정적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9) [참고 2] 의료제품 분야 시각·청각장애인 표시 관련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구분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지원분야	행정적	행정적, 연구개발, 실태조사	행정적·기술적
위탁근거 (조항)	—	표시 방법과 기준의 개발, 교육·홍보, 실태조사·평가·연구개발 업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 (「약사법」 제65조의6)	표시 방법과 기준의 개발, 교육·홍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등 업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의료기기법」 제23조의2)

□ 기획예산처: 일부수용

- 점자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타당하나, 표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점자표시 등 표시방안 마련 연구예산: 2027년 정부안에 기반영(3억원)

-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공모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고 관련 업무가 식품안전정보원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품안전정보원을 위탁기관으로 특정하는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26년 점자표시 등 표시방안 마련 연구예산: 1억원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재정적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의료제품 분야 시각·청각장애인 표시 관련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약사법」 제65조의6(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등의 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표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장애인의 의약품등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표시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과 기준의 개발, 교육·홍보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평가·연구개발 업무를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u> ⑥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 1.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행위 2. 의료기기에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행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음성·영상 등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의 개발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 및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